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미합중국 군함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근거 신설〉
■ 이언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948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미합중국 군함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근거 신설 (안 별표 제220호)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언주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8. 1.

다. 회 부 일 : 2025. 8.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특화 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미합중국에게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9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미합중국 군함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근거 신설 (안 별표 제22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 미합중국 군함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 특례 근거 신설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¹⁾는 이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서만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한 [별표]의 개정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개별법상의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여야 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 및 제6조²⁾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거나 운용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것

2. 국유재산특례가 예산 지원, 현물출자나 그 밖의 다른 방법보다 특례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법으로서 적절할 것

3.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적용대상 및 적용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할 것

4. 국유재산특례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운용될 것

제6조(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유재산특례 신설 등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이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요건으로 ① 특례목적의 공익에 부합 여부, ② 예산지원 등 다른 수단
에 비해 효과적인지 여부, ③ 특례요건의 명확성과 구체성, ④ 존속기
간의 적절성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무분별한 특례 신설을 억제함으
로써 국유재산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준에 따라 신설 국유재산특례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유재산법」 및 시행령은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원칙적으로
해당 재산가액의 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하 생략)

제47조(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① 일반재산의 대부의 제한, 대부료, 대부료의 감면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32
조, 제33조, 제34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6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개정안은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
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_2211905호)에 따라, 대한민국이 미합중
국 군함의 건조·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지정한 특화단지(이하 “특화단
지”라고 함)에 입주하는 기업과 미합중국(이하 “입주기업등”)에 국유
재산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참고로,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특화단지”란 대한민국이 미합중국과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미합중국 군함 건조·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지정한 단지로서, 특화단지로 지정된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보며, 특화단지에서는 대한민국 또는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자만 종사할 수 있음³⁾.

개정안에 대하여 현행법 제5조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특례인정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개정안은 특화단지의 입주기업등에 국유재산 사용료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특화단지의 안정적 운영 및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고, 중국적으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조선산업 발전 및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유재산특례 신설의 공익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임.

3)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7조(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 ① 대한민국 정부는 미합중국과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미합중국 군함의 건조·유지·보수 등을 위한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대한민국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대한민국 정부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특화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미합중국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⑤ 대한민국 정부는 특화단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부담한다.
- ⑥ 대한민국 또는 미합중국의 국적을 가진 자가 아니면 특화단지에서 군함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⑦ 그 밖에 특화단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조약·협정 등에 따른다.

둘째,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가 특화단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부담⁴⁾하도록 하는 등 재정 지원 규정과 함께, 한미 군함 등 조선산업 협력 증진기금 조성을 통하여 대한민국-미합중국 조선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충당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다만,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지 않는 경우 정부의 재정 지원이 국유 재산 임대료를 보전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특화단지 입주 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특화단지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유재산특례 감면 대상을 특화단지 입주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4)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7조(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③ 대한민국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⑤ 대한민국 정부는 특화단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부담한다.

5)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8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한미 군함 등 조선산업 협력 증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9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3. 제10조에 따른 장기차입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기금의 운용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1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출자
 - 가. 우리나라와 미합중국 간의 군함 등 조선산업에 관한 우호협력관계 증진 사업
 - 나. 우리나라 조선업의 미합중국 군함의 건조·유지·보수 등에 관한 수주사업
2.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비용
3. 우리나라 및 미합중국 간 군함 등 조선산업의 전문 인력 및 기술 교류 지원
4. 그 밖에 기금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비용의 지원

특화단지 지정 기준 및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자격 요건 등을 법률 또는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넷째, 개정안은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특례의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개정 시 존속기한 설정 원칙⁶⁾을 감안하여 존속기한의 적절성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됨⁷⁾.

참고로,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인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_2211905호)에 대한 심사결과를 전제로 하므로, 해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음.

6) 사용료 감면: 5년 / 양여·장기사용 허가: 8년

7)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 및 기금 설치를 규정하고 있어 추가 특례는 적절하지 않고, 특구 지정 기준과 입주기업의 자격 요건 등이 보다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 2211905호)

제7조(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① 대한민국 정부는 미합중국과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미합중국 군함의 건조·유지·보수 등을 위한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대한민국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대한민국 정부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특화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미합중국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⑤ 대한민국 정부는 특화단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부담한다.

⑥ 대한민국 또는 미합중국의 국적을 가진 자가 아니면 특화단지에서 군함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⑦ 그 밖에 특화단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조약·협정 등에 따른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별표			
< 신 설 >	연번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존속기한
	220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5. 12. 31.

문의처

02)6788-5150